

2021년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: 2021. 10. 5.(화요일), 10:30
-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권현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E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1-255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

시정권고 심의

-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05건(안건번호 제2021-133292호~134696호)
 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1-133292호~133333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, 전송권,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,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,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.
 - 안건번호 제2021-133334호~133350호는 웹하드를 통해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.
 - 안건번호 제2021-133351호~133352호는 ○○○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.
 - 안건번호 제2021-133353호는 이미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한 전송중단 조치가 완료되어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결함.
 -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,62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
○ 제2호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- 주요내용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480개의 URL 정보에 관한 '구글'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(안건번호 제2021-14007호~14486호)
- 회의결과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4개, 총 48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하고 현재 부존재 사이트인 '★★'의 80개 URL 정보에 대해서는 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255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- D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- B, E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.

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A 위원: TV에서 나오는 채널이 전 세계 어디선가는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는 것인가?
- E 위원: 그러함. 별도 불법 서버를 통해 셋톱박스에서 수신하고 있음.
- 오진해 전문위원: 오늘 시연드린 '△△△△'는 기존 심의했던 '■■■■■■■■'와는 신호를 받아오는 기술적인 방법에 차이가 있음. 다만 시청자가 이용하는 방법은 '■■■■■■■■'와 동일함.
- A 위원: 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, 기기를 구입해서 보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막기 어려움. 원리자들이 시청행위를 문제삼아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.
- E 위원: 셋톱박스 기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이를 통해 서버를 둔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.
- A 위원: E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항상 우리가 주의하여 논의할 여지가 있는 부분임.
- E 위원: 셋톱박스 자체는 수신기일 뿐인데, 기계 자체를 파는 것이 불법인지는 의문임.

- A 위원: ▷▷▷▷, ◆◆◆와 같은 케이스임. 20년동안 어느정도 정리가 된 사안인데, 요컨대 스트리밍 기기 자체를 처음부터 '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'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 난시청 해결만을 위하여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 부당할 수 있다는 것임.
- D 위원: 저작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, 방조자가 직접침해 행위자를 지배하며 도구로 이용하는 이른바 '도구이론' 개념으로 보임.
- A 위원: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극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권한을 활용하고, 만약 불법 용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,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유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음.
- 오진해 전문위원: '■■■■■' 기술 보고서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기기에 앱이 설치된 상태로 보내주거나, 설치방법을 같이 안내하고 있음.
- A 위원: 그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순번 1번~42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
- D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B, E 위원 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33292호~13333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33334호~133350호는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C, E 위원 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33334호~1333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1-133351호~13335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으로 이중 안전번호 제2021-133353호는 현재 저작권법 제103조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·전송의 중단이 완료된 상황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E 위원: 안전번호 제2021-133353호는 이미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어 추가적인 시정권고가 불요하므로 부결의견이며 나머지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
- B, E 위원 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33353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1-133351호~13335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33354호~134696호는

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음악, 프로그램, 게임, 출판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
(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(영화 '[중점](영화)프리 가이 (2020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33383호 '[중점](영화)프리 가이 (2020)'는 2021. 8. 11.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87포인트에 배포중임.

(영화 '[중점](영화)랑종 (2021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33792호 '[중점](영화)랑종 (2021)'는 2021. 9. 15.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636포인트에 판매중임.

(방송 '(방송)오징어 게임(2021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34363호 '(방송)오징어 게임(2021)'은 2021. 9. 17. 공개한 한국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,020포인트에 판매중임.

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2,628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.
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-133354호~13469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.
- B, D, E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

하는 것이 타당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33354호~13469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안전번호 제2021-133292호~133333호, 제2021-133334호~133350호, 제2021-133351호~133352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-133353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-133354호~13469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”

○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.

(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4007호~14486호 중 안전번호 제2021-14120호~14199호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전에 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26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0. 12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